

4 부채 / 채무 / 채권

4-1. 통합부채 현황

-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분		2018년	2019년	증감
통합자산		1,084,954	1,157,801	72,847
통합부채		24,669	10,563	△14,136
	유동부채	7,297	4,358	△2,939
	장기차입부채	10,197	0	△10,197
	기타비유동부채	7,205	6,205	△1,000

- ▶ '19년 결산 순계기준
- ▶ 우리 구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3개로 공사·공단 1개, 출자·출연기관 1개를 포함하고 있음
- ▶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「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」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·합산된 것임
- ▶ 통합자산 : 유동자산, 투자자산, 일반유형자산, 주민편의시설, 사회기반시설, 기타비유동자산
- ▶ 통합부채 : 유동부채, 장기차입부채,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
 - 유동부채 : 단기차입금, 유동성장기차입부채, 기타유동부채 등
 - 장기차입부채 : 장기차입금, 지방채증권
 - 기타비유동부채 : 퇴직급여충당부채,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

4-2.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

-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(퇴직금, 미지급금, 보관금 등)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, '4-6. 지자체 채무 현황'의 지방채무와 '4-3. 지방공기업 부채' 중 직영기업(공기업 특별회계)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우리 구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2018년	2019년	증 감	비고
자산(A)	1,072,166	1,144,777	72,611	
부채(B)	24,456	10,504	-13,952	
자산대비부채비율 (B/A*100)	2.28	0.32	-1.36	

- ▶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
- ▶ 부 채 : 유동부채, 장기차입부채, 기타비유동부채
 - 유동부채 : 단기차입금, 유동성장기차입부채, 기타유동부채 등
 - 장기차입부채 : 장기차입금, 지방채증권
 - 기타비유동부채 : 퇴직급여충당부채,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
- ▶ 자 산 : 유동자산, 투자자산, 일반유형자산, 주민편의시설, 사회기반시설, 기타비유동자산

4-3.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

- 우리 구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. 지방공기업 부채 중 ‘직영기업’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‘공기업 특별회계’의 부채로서 ‘4-2. 지자체 부채 현황 (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)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	2018년				2019년			
		자산 (A)	부채 (B)	자본 (C)	부채비율 (B/C)×100	자산 (A)	부채 (B)	자본 (C)	부채비율 (B/C)×100
합 계		698	239	459	52.07	519	60	459	12.98
공단	인천광역시중구 시설관리공단	698	239	459	52.07	519	60	459	12.98

4-4. 출자·출연기관 부채 현황

- 우리 구의 출자·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	2018년				2019년			
		자산 (A)	부채 (B)	자본 (C)	부채비율 (B/C)×100	자산 (A)	부채 (B)	자본 (C)	부채비율 (B/C)×100
합 계		12,549	4	12,545	0.03	12,964	0	12,964	0
출연 기관	소 계	12,549	4	12,545	0.03	12,964	0	12,964	0
	중구 월디장학회	12,549	4	12,545	0.03	12,964	0	12,964	0

4-5. 우발부채 현황

- 우발부채는 **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**를 의미하며, 지방자치단체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- 우발부채는 **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**를 의미하며, 지방자치단체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2019년 우리 구의 우발부채는 없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	2018년	2019년	증감
계		0	0	0
지급보증(보증채무부담행위)		0	0	0
채무부담행위		0	0	0
BTO사업 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		0	0	0
계 약 상 약 정	재매입약정	0	0	0
	매입확약	0	0	0
	손실부담계약	0	0	0
	책임분양확약 등	0	0	0
	산하기관 차입금상환,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	0	0	0

- ▶ 관계기관(지방자치단체, 지방공기업 및 출자·출자기관)간 상호 보증·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

4-6. 지자체 채무 현황

- ☐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(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). 우리 구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'18년도 현재액 (A)	증 감 액			'19년도 현재액 E=(A+B)
		계 (B=C-D)	발생액 (C)	소멸액 (D)	
합 계	13,216	△13,216	0	13,216	0
일 반 회 계	13,216	△13,216	0	13,216	0
특 별 회 계	해당 없음.				
기 금 회 계					

❖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명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15	2016	2017	2018	2019
채무현황	5,209	15,756	15,275	13,216	0
인구수	114,493	115,249	117,999	122,499	135,135
주민 1인당채무(천원)	45	137	129	108	0

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

(단위 : 천원)



4-7.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15	2016	2017	2018	2019
지방채발행한도액(A)	2,600	2,700	3,100	3,100	3,100
발행액(B)	2,100	11,088	0	0	0
발행비율(B/A*100)	80.77	410.66	0	0	0

- ▶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,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
- ▶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
 - * 별도한도액 =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+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+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
 - **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=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% 이내이고,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‘공공 및 기타대출’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

4-8. 일시차입금 현황

-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. 우리 구는 2019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이 없습니다.

4-9.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

-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(BTL, BTO 등)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. 우리 구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.

-
- BTL(임대형 민자사업)이란?
 -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,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,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.
 - BTO(수익형 민자사업)란?
 - 수익성이 있는 도로, 교량, 터널,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.
- ※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,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
-

4-10. 재정건전성관리 계획 · 이행현황

- ☐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「지방재정법」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'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, '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, '20~'24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▶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('20.11.예정)

4-11. 보증채무 현황

- ☐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구가 2019년 한 해 동안 지급 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.

4-12. 채권 현황

- ☐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(융자)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.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'18년도 현재액 (A)	증 감 액			'19년도 현재액 (A+B)
			계 (B=C-D)	발생액(C)	소멸액(D)	
합 계		4,107	△458	80	538	3,649
일 반 회 계		3,541	△405	10	415	3,135
기금 회계	사회복지기금	566	△53	70	123	513

▶ '19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

❖ 채권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15	2016	2017	2018	2019
채권현황	4,798	4,158	4,177	4,107	3,649

▶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

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

(단위 : 백만원)

